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91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어린이·청소년 인권교육 사업은 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」 제62조에 근거하여 어린이·청소년의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보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,
- 나. 어린이·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등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
- 다. '21.12.31.자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,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해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요청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교육 사무

나. 위탁내용

- 어린이·청소년 당사자 및 양육자, 공무원, 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사업

- 어린이·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
- 어린이·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, 보급 등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
 -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(인권교육)
- 필요성
 - 어린이·청소년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

라. 위탁기간 : '22. 1. 1. ~ '23. 12. 31.(2년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(사)국제아동인권센터)

바. 소요예산 : 193백만원('21년)

- 인건비 110백만원, 운영비 9백만원, 사업비 74백만원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제62조(인권교육)

-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·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, 보호자, 공무원, 의료·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·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·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어린이·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어린이·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, 연수, 학습 등에는 빈곤·장애·소수자 어린이·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평가팀 구인순(☎ 2133-4135)